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원취약 농촌의 경관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오민근* · 옥주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과 석사과정

목 차

I. 서론

1. 연구배경

- 1.1 농촌정책환경의 변화
- 1.2 농촌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의 문제
- 1.3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경관의 보전 및 활용가치 부각

2. 연구목적

3. 자원취약농촌(resources-poorly rural area)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고찰

- 3.1 조건불리지역(Less-Favored Area)
- 3.2 과소지역(Depopulation area)
- 3.3 낙후지역(Depressed region)
- 3.4 오지(Back region)

II. 연구사

1. 지역활성화 및 경관활용 및 보전에 관한 연구

- 1.1 농촌경관에 관한 연구 동향
- 1.2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2. 기타 관련 연구

III. 연구범위

IV. 연구방법

1. 국내답사
2. 국외답사

V. 일본 농촌지역에서의 경관보전 및 활용 현황

1. 관련정책현황

- 1.1 국가수준
- 1.2 지방자치단체 수준
- 1.3 국가기관의 농촌경관 관련 주요 사업
- 1.4 소결

2. 사례고찰

- 2.1 야마가타현(山形県) 카네야마마치(金山町)의 경관 보전 및 활용
- 2.2 神戸市の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존 사업
- 2.3 소결

VI. 한국 자원취약농촌에서의 경관의 보전 및 활용 현황

1. 관련 정책 수립 현황

- 1.1 국가수준
- 1.2 지방자치단체 수준
- 1.3 국가기관의 농촌경관 관련 주요 사업
- 1.4 소결

2. 사례 고찰

- 2.1 개요
- 2.2 보전 수법
- 2.3 활용 수법
- 2.4 운영 체제
- 2.5 소결

VII. 결과 및 고찰

1. 지역활성화의 기본적 고려사항

2. 정책적 측면

- 2.1 관련 제도 정비 : 「농촌경관법」 신설 필요
- 2.2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업실시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역할 분담

3. 보전 및 활용 수법

4. 운영적 측면

- 4.1 운영주체의 조직
- 4.2 운영 수법

VIII. 결론

요약

2000년대 이후 농촌재정비 관련 사업들은 각 소관 정부부처들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각 개별사업들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제점 중 비교적 기존 사업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자원취약농촌을 경관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률 및 사업에서 나타난 개념들을 고찰한 결과, 자연·문화·역사·생활 자원으로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물적·비물적 요소가 부족한 지역을 자원취약농촌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원취약농촌의 개념으로 실제로 물적·비물적자원이 부족한 지역,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징적 자원이 없어 지역의 특색을 갖추지 못하는 지역, 자연·문화·역사·생활자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인재 부족이나, 기획력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농촌지역, 현재 많은 농촌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능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 정의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일간의 국가수준,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의 경관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비교하고 현장조사를 함으로서 각국의 자원취약농촌의 경관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현황을 알아보며, 비교 분석함으로서 현재 한국 자원취약농촌의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을 위한 지역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지역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지역활성화의 기본적 고려사항,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의 농촌경관법 신설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역할분담, 셋째, 보전 및 활용수법, 넷째, 운영적 측면에서 운영주체의 조직과 운영수법을 언급하였다.

I. 서론

1. 연구 배경

1.1 농촌정책환경의 변화

WTO 출범이후 농촌은 구조적인 개선 노력에 따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5일제의 시행으로 관광산업이 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로 환경 훼손 및 자연 생태계 파괴를 불러 일으켜온 대중관광의 개념보다는 자연 체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광 개발에 대한 요구가 새롭게 증대 되고 있다(정건호, 2004).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의 가치는 다시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제정된 법률들 중에서 농촌의 경관과 향토자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제정되고 있음에서 증명될 수 있다.

1.2 농촌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의 문제

정부 부처들 간의 다양한 사업 시행은 농촌마을마다의 특징을 살리는 계획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없던 농외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며 현재 많은 마을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기간은 단기간 이루어져 장기적 지속가능한 개발이 어려우며, 대상지 선정 시, 마을 주체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관심부족 및 정보 습득의 어려움 때문에, 지자체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¹⁾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주체는 주민에 대한 교육부재, 홍보부족과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주민의 참여는 현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사업대상 선정 시 자연·문화·역사·생활 자원들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들만 추천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관련 사업들이 중복지정되어 농촌의 이분화,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1.3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경관의 보전 및 활용가치 부각

현재 대부분의 마을사업들은 지자체 추천에 따른 사업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들의 지정대상이 된 농촌마을들은 지역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 및 비물적 자원이 존재하는 마을들이다. 즉, 바꿔 말하면 관광개발이 가능한 관광자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체로 접근이 용이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문화·역사·생활 자원이 취약하고 여건이 열악한 농촌의 지역활성화를 위한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농림부에서는 농촌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의 특징적인 작물을 심어 잘 가꾼 농가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관보전직불제’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²⁾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농촌경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켜, 농촌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 실제 산업화 이후 농촌마을에서 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농촌마을 발전을 도모하는 사례를 극히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이재준, 2003).

2) 2004년 8월 25일자 조선일보

[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관광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농촌 가치 부상 ● 각 부처 목적에 따른 개별 사업 추진으로 연계성이 없이 특정마을에 사업 중복 지정 ● 관 주도 사업으로 인한 민간 참여에 대한 제도적 한계 ● 관 주도 사업으로 주체와 객체의 정체성 미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재, 홍보부족, 관심부족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현실상 불가 ● 자치단체 추천으로 내용 채우기식 제안서 및 계획서 작성 ● 자연·문화·역사·생활 자원이 발전 가능한 지역만 대부분 추천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체의 역할 수행 시 지침 부재 ● 사업의 중복지정으로 인한 농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 총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재
	▼
필요성	비혜택·자원취약 농촌에 대한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2. 연구 목적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발전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취약 농촌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개념에 기초하여 자원취약 농촌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향후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자원취약 농촌의 경관자원의 활용 및 보전에 관해 비교함으로써 현재 한국 농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원취약농촌의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자원취약농촌(resources-poorly rural area) 관련용어에 대한 개념 고찰

먼저 자원취약농촌과 유사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자원취약 농촌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관련 연구와 관련 법률 및 개별 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사 개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원취약농촌’의 개념을 보다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조건불리지역, 과소지역, 낙후지역, 오지 등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조건불리지역(Less-Favored Area)

현 국토계획의 구조적인 문제는³⁾ 농촌을 점점 소외 지역으로 만들었으며 EU에서는 이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한국의 사회, 정치, 경제적 지원은 인적, 물적, 이념적 자원이 중심부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창민,2002). 또한 농촌탈출이라고 까지 표현되는 농촌 인구의 급속한 유출과 이동은 그것이 대부분

러한 경제적 자립의 한계가 있는 조건불리지역의 직접직불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정책은 1940년부터 영국에서 실시하여 산간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한 정의를 EU에서는 ‘명확히 규정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곳⁴⁾이어야 한다(엄대호, 2002)고 정의하고 있으나 나라별로 공통되는 기준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EU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지역을 조건불리지역(Less-Favored Area)이라 규정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은 자연적·사회적 조건의 불리함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박종섭, 2000).

3.2 과소지역(Depopulation area)

과소(過疎)지역의 사전적인 정의는 산업화나 도시화 등에 수반되는 인구유출로 기존의 생활수준 또는 생활방식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인 지역을 일컬으며, 주로 농어촌에서 인구의 급격한 이농(離農)·이촌(離村) 현상이 일어난 결과, 지역 주민의 생산과 생활의 여러 기능이 마비되어 생활의 질서가 파괴된 상태를 말한다. 이같이 현재 과소지역의 의미에는 인구감소 및 인구 유출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다.

3.3 낙후지역(Depressed region)

낙후지역은 국토기본법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해 정의 되고 있다. 제16조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국토기본법 제16조)으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요건은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말한다(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0조).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연평균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낙후지역을 3년마다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공포하면서 낙후지역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3.4 오지(Back region)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에서는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오지(奧地)’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사업지구로는 403개의 면지역이 해당되며, 1999년 행정자치부에서 책정한 오지개발 사업비는 5개 분야⁵⁾로 나누어 투자

도시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특히 대도시의 과밀문제를 야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인구가 유출된 농촌지역에도 그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 공간적 문제를 낳고 있다(이한방, 2001)

4) 장우환(1997)은 우리나라 조건불리지역의 읍·수와 경지면적을 분석 가능한 1041개 읍·면 중 16.9%에 해당하는 237개 읍·면을 조건불리지역으로 구분하였다.

5) 생활기반시설(도로개설 확포장 및 교량개설 등) / 산업기반시설(경지정리, 전화사업, 용수로 등) /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 경

되었다.

이상과 같이 자원취약 농촌과 관련한 유사 개념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자원취약농촌과 유사개념 비교

구분	연구자	정의	유사용어간의 관계
조건불리지역	유진채·이희찬 (2003)	•산간지역, 도서지역 •농업생산의 자연, 사회, 경제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	조건불리지역=C자원취약농촌 •주로 농업조건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 •대상지 오지, 산간, 도서지역으로 설정
	엄대호, 한경수, 전택기(2003)	•오지개발촉진법상의 오지만을 대상 •기준을 경사도로 제시	
	스위스방식* (필지별 구분방식)	•개발농지 물리적 조건에 따라 대상지 선정 •지역간 격차가 적을 경우 경지의 고도, 기후, 일조량, 토질, 농업기반 등 종합적으로 고려	
	EU방식* (행정구역단위)	•행정구역 단위로 영농조건 사회경제적 조건 고려 •산악지역: 표고, 경사 •일반조건 불리지역: 농가평가지수, 인구밀도, 취업인구 중 농업종사자율	
	일본의 지불방식* (절충식방식)	•행정구역 대상으로 물리적 열악한 지역 선정 •사회경제지표, 자연조건, 물리적 기준 보완	
	송두범(2002)	•자연적·사회적 조건과 생활여건·농업조건, 산업입지여건이 불리한 지역	
과소지역	윤근섭·최낙필 (1994)	•급속한 인구유출에 의해 종래의 생활기반을 유지하기 곤란한 지역	조건불리지역≠자원취약농촌
	이한방(2001)	•농촌 인구 감소지역을 기준으로 휴경화원인, 과정으로 범위 설정	•과소지역이 농촌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낙후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2조6항 (2004)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함.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한 오지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접경지역 •농어촌정비법 제31조 의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9조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	조건불리지역=C자원취약농촌 •주로 개발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불리적인 내용 대부분 고려
오지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 (1994)	•오지 :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오지=C자원취약농촌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을 기본전제로 함
신활력지역	신활력지역발전구상 (2004)	•신활력지역 :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지역혁신을 통해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곳 •4대 선정지표(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상황)를 활용, 전국 234개 시군구 종합평가를 통해 하위 30%이내에서 신활력지역 선정	신활력지역=C자원취약농촌 •물적 자원 및 인적자원 부족으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엄대호·한경수·전택기(2002), '조건불리지역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연구', p.17의 내용 및 관련 법률과 정책자료를 토대로 필자 재정리

‘조건불리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산악, 도서, 오지지역의 의미가 짙으며,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농업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많다. ‘과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는 기본적인 기준을 내재하고 있음으로 농촌과 도시와의 범주를 오가는 개념이다. ‘낙후지역’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범역설정이지만 현재 낙후지

로당 등) / 주거환경개선(마을안길, 간이상수도, 하수도 등) / 국토보전시설(소하천 정비, 산촌종합개발 등)

역의 기준으로 인구, 경제성장률, 기반시설 등 물리적인 요건만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취약 농촌의 개념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다. 또한 실제로 지정되는 지구는 산악, 도서, 오지지역 등으로 조건불리지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정되고 있다. ‘오지’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인구 및 자원의 유출입이 불편한 지역이므로 자원취약농촌에 포함되지만,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기준으로 오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자원을 기준으로 보는 자원취약농촌과는 개념이 다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원취약농촌’이란 특별히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며, 기존에 타 학문분야에서도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일컬어져 오지 않은 개념이다. 여기서 ‘자원’이란 자연·문화·역사·생활자원으로서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물질·비물질 요소가 부족한 지역을 자원취약농촌⁶⁾이라고 본 연구에서는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따라서, 자원취약농촌의 공간적 범위를 구분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자원취약 농촌의 공간적 범위와 특징

구 분	비 고
자원이 취약한 농촌	물질·비물질 자원이 부족한 지역
기존 사업지정에서 제외된 농촌지역	특징적, 차별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지역
자연·문화·역사·생활자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농촌지역	기획력 부족 인적자원 부족
농촌관련 사업들에 대한 정보 수집 미숙으로 신청조차 못하는 마을	정보접근능력 부족

6) 기존의 유사 개념들이 농촌의 부족한 측면 및 취약한 측면을 반영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신활력지역 발전구상(2004.7.15)’에서는 ‘신활력지역’을 ‘산업의 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지역혁신을 통해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곳’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보다 발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연구사

농촌지역에서 경관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관련한 연구로써,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농촌경관에 관한 연구로, 농촌경관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것과, 두 번째는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외에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1. 지역활성화 및 경관활용 및 보전에 관한 연구

1.1 농촌경관에 관한 연구 동향

현재 농촌경관에 관한 연구 중에서 서주환(1996)은 농촌공간측면에서 경관 문제를 접근하여 농촌 특성에 맞는 계획적 경관정비방안을 검토하였다. 조동범(1997)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정책의 발달과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서주환(2002)은 농촌의 중요한 경관 요소와 농촌 경관 저해 요소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영(2002)은 CVM기법을 이용하여 농촌경관에 대하여 한·일 비교를 하였다. 최재웅(2003)은 농촌 문화경관의 마을 숲 보전사례를 통해 마을숲 이용형태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Colin D.(2000)는 자연경관과 인간의 문화의 결합이 뉴질랜드의 Aotearoa 지방의 경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하였다. Hannes Palang(2002)은 2002년 8월 Estonia의 Tartu와 Otepaa에서 열린 농촌경관 연구를 위한 회의의 내용을 4가지 테마로 연구하고 있다. Paul Claval(2003)은 농촌경관과 기호학의 관계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연구하여 경관과 언어사이의 관계를 연구 하였다. 御前敏博외(2003)는 농촌집락경관보전을 위한 개념제안에서 농촌경관요소의 다양한 의미로 구술자료, 관찰자료, 조사 자료와 산림, 주택지역, 농업지역과 같은 토지이용이 어우러져서 농촌경관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1.2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표환(1997)은 내생적 지역활성화의 본질의미와 요건, 전략형성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박광서(2000)는 일본의 중산간 지대를 중심으로 중산간지대의 유형구분과 일본의 지역활성화 방법을 연구 하였다. 김창민(2002)은 문화적 지역활성화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연구 하였다. 정기환(2002)은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 투어리즘의 정책배경과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추진전략으로 마을단위접근, 지역사회의 주도, 추진주체간의 역할분담을 제시하였다. 小山 環외(2002)는 농촌과 도시 교류시책의 유형 및 전개에 관한 연구에서 교류 사업을 9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고, 생활체험형, 물건판매이벤트형, 학습형 등으로 증가해오고 있다고 하였다.

2. 기타 관련 연구

김봉원(1997)은 수도권 근교농촌 중 비농업 인구의 비율이 높은 비농업지대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여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인자의 정책적 시사내용이

무엇인가를 연구 하였다. Kazuhiko Takeuchi(1998)은 농촌을 거리에 따라 유형을 구분을 하고 생태마을을 설계함으로써 일본 초세이 지방의 지역활성화를 연구 하였다. Andy Kieby(2003)는 미국의 Ithaca에 최근 설립된 생태마을을 처음 5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의 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농촌경관에 관한 연구는 유럽지역 지리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분야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농촌경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경관을 시각적인 경관이 아닌 문화적 경관의 시각에서 조명한 논문도 극히 드물며, 농촌경관을 선호도 평가에 의해 선호경관요소와 경관저해요소를 구분 짓는 계량적 측면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전반적으로 지역활성화의 개념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정확한 개념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어떤 시점에서 누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조경분야에서는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로 아직도 도시에 초점이 맞춰져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경관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주체에 대한 지침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Ⅲ.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중 국내의 경우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⁷⁾를 중심으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소권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향후 소득증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농촌공간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특징적 자원이 없더라도 추진주체에 의해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내재하고 있으며,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조직을 만들어 마을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추진주체의 의지나 운영방식이 지역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사업중복지정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외의 경우는 일본의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 중 경관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한 선진적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는 山形県 金山町와 兵庫縣 神戸市를 선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2004년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선진사례 수집을 위해 2003-2004년 동안 두 차례의 일본현지 답사를 통한 내용과 문헌 고찰을 통한 국내외 비교를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자원취약농촌의 개념을 정립하여 기존 개념을 포괄하도록 하며, 국내 자원취약농촌의 문제점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조사 및 답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아울러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지역활성화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을 고찰하며,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법의 제안으로 하였다.

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으로 전 국토의 농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 국토의 농촌을 4가지 유형(전통보전형, 지역특화형, 농촌관광기반형, 친환경 육성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IV.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역활성화 방법 중 자원취약농촌을 중심으로 경관의 활용 및 보전을 비교 분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문헌조사 및 관련 법규검토를 통하여 韓日 경관관련정책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둘째, 국내외 현지답사를 통하여, 경관자원현황과악 및 주체들의 인식과 농촌마을의 지역활성화방법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우리나라 자원취약농촌의 지역활성화 수법 및 추진체제 방안을 제시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자세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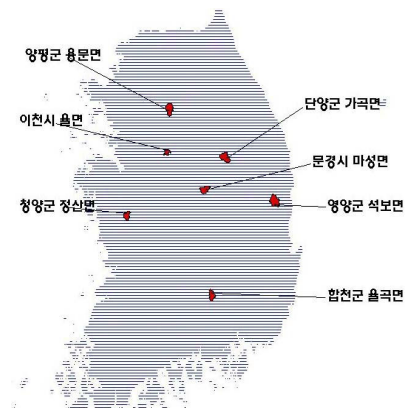
1. 국내 답사

(1) 현지답사

현지답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⁸⁾를 중심으로 각 사업 유형별로 하나의 권역⁹⁾을 다녀왔다. 현장답사는 1차 2004년 6월15일, 2차 8월13~14일, 3차 9월17~18일, 4차 10월 2일 시행 하였다(표 4 참조). 이때 해당 농촌마을의 현황과악을 위해 이장과의 인터뷰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4] 현장 답사 개요

구분	조사 일시	사업 유형	권역	권역내 소재 마을
1차	2004년 6월15일	농촌관광 기반형	석산	경기도 이천시 읍면 석산2리,산양1리, 산양2리, 산성1리, 북두2리, 오성2리
2차	2004년 8월 13,14,일	지역 특화형	연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1리, 연수2리, 오촌리
		친환경 육성형	상내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상내 1리,2리, 하내1리, 하내 2리
		지역 특화형	가곡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대대리 사평리
3차	2004년 9월 17,18일	전통 보전형	원리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지경리, 답곡리
		친환경 육성형	영전	경상남도 합천군 울곡면 영전1리, 영전 2리 제내리, 문림리
4차	2004년 9월25,26일	농촌관광 기반형	서정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역촌리, 용두리, 천장리, 마치리



[그림 1] 대상지 권역별 위치

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장소를 무작위로 선정 하였다.

9) 권역은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인근 마을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권역구분 기초자료: '영농지구 구분도', '92~'96)
 - 지형적으로 입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경계 등으로 인해 소규모 권역구분이 가능한 지역
 - 인문사회적으로 역사·문화적 특성이 같고, 주민간 공동체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동질성과 유대감을 갖는 지역

(2) 인터뷰 내용

인터뷰는 각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경관에 관한 인식도 및 자원의 유무, 추진주체의 의지 등이 지역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경관자원의 현황 및 활용 유무, 추진주체 유무, 사업 중복지정여부, 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의지, 기타 사항으로 크게 5가지 사항으로 하였다.

(3) 문헌고찰

국내외 관련 학회지, 홍보책자, 심포지엄 자료, 관련보고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행하였다.

2. 국외 답사

일본 답사는 일본에서 농촌에서의 경관보전 및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대표적 지방자치단체인 山形県 金山町와 兵庫縣 神戸市 두 곳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은 2003년 11월 10일~15일 5박6일, 2004년 6월21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방문시에는 관련 공무원과의 인터뷰 및 답사, 자료조사 및 수집을 실시하였다.

[표 5] 일본 지방자치단체 방문 내용

지방자치단체	방문일시	방문부서 및 담당자	방문내용
山形県 金山町	2003.11.11~12	건설과 주택경관계 계장 藤山一営 / 기획과 과장 阿部 進	경관정책 및 사업, 주민참여, 지역활성화수법, 사례지방문 등
兵庫縣 神戸市	2003.11.13 2004.6.21	산업진흥국 농정계획과 朝生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존조례 및 계획보고서, 현황 등

V. 일본 농촌지역에서의 경관보전 및 활용 현황

1. 관련 정책 현황

일본은 올 2004년 6월에 경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근거 법률이 미비한 상태에서 행해오던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어, 그 법률적 근거를 상위법에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경관정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는 국가공공기관이 국가적 수준에서 경관관리의 정책적 밑그림을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관련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자주조례의 성격을 갖는 경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고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농촌경관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국가 수준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1 국가수준

(1) 아름다운 국가 만들기 정책대강(국토교통성, 2003)

이 정책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대처, 각 주체의 역할 연계,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경관관리에 관한 인재육성과 관련 정보의 제공, 그리고 경관형성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국가만들기’를 위한 시책으로 15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 확보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전개하며, 단기간에 중점적 및 집중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행동프로그램(action program)이라고 하고 있다.

(2) 물과 綠의 ‘아름다운 마을’ 계획 21(농림수산성 2003, 9)

농산어촌의 매력과 시책의 전개방향을 담고 있다. 이는 농산어촌에서 주민이 여러 지역의 매력을 재인식하고, 도시적인 생활양식 및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도시와의 교류를 진행하고, 그것을 지역활성화로 연결해가는 것에 대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전개해나가기 위한 기본적 시점으로써 생산 및 생활 양면에서의 공간적 조화, 건전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지역의 생활 및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지역사회 유지, 농산어촌의 매력을 활용한 도시와의 교류 전개라는 4가지를 들고 있다.

(3) ‘농림수산업에 관련한 문화적 경관¹⁰⁾의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문화청 2003,6,12)

농림수산업에 관련한 문화적 경관의 보존·정비·활용에 관한 검토위원회가 수행한 조사연구로써, 문화적 경관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대한 보호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이다.

세계유산조약에서 규정한 문화적 경관의 제2영역이 농림수산업과 관련한 부분으로, 필리핀의 계단식 논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유럽의 포도밭까지도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산간지역을 비롯하여 ‘문화적 경관’이 전개하는 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및 농촌진흥의 관점에서 농림수산성이 각종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문화적 경관’의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달성하고 있다.

(4) 경관법의 제정

일본에서는 지난 6월 18일에 도시 및 농산어촌 등에서 양호한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관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도시 및 농산어촌 등에서 양호한 경관형성 도모를 위한 기본 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함과 동시에 경관계획의 책정, 경관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에서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위한 규제, 경관정비기구에 의한 지원 등 소요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처음으로 정하는 경관에 대한 종합적 법률이다.

10) 문화적 경관이란, 1972년 제17회 유네스코총회에서 정한 세계유산조약에서 규정한 ‘경관’의 종류중 하나로, 기존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의 사이를 매우는 새로운 개념이다(西村幸夫, 2004. 都市保全計画, 東京大学出版会, p. 792)

또한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내리는 ‘문화적 경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농산어촌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전통적 산업 및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하며,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한 토지이용의 형태 또는 고유의 풍토를 나타내는 경관으로 가치가 높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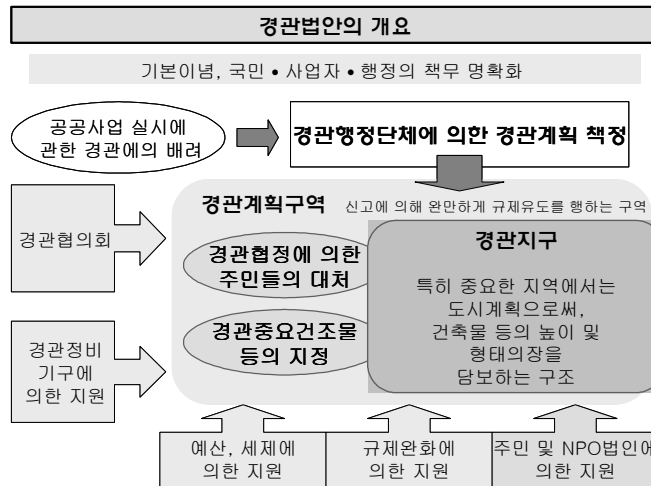


그림 2 경관법의 구조

*출처: 棚野良明(2004), “景観法案について”, 日本都市計画学会誌 Vol.53 No.2: 91

1.2 지방자치단체 수준

일본 최초로 1968년에 가나자와시(金沢市) 전통환경보존조례가 제정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 경관관련 조례제정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필두로 일본의 경관관리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활성화되어 왔다. 1972년 京都市는 교토타워건설에 의한 경관문제 발생을 계기로 시가지 경관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후 8,90년대에는 神戸市를 필두로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경관조례¹¹⁾를 통해 각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정체성의 유지 및 환경보전에 지역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촌의 역사적 경관, 자연경관, 농촌집락경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조례¹²⁾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장려수단¹³⁾을 마련하고 있는 조례가 많다. 아울러 조례의 내용에 협정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것은 복합형, 환경정비형, 문제해결형으로 구분¹⁴⁾된다.

1.3 각 국가기관의 농촌경관 관련 주요 사업

11) 2003년도 일본 경관조례 제정현황은 전체 都道府縣 47개 중 20개의 都道府県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인 市町村 전체 3,190개 중에서 450개의 市町村이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음(国土交通省, 2004, 景観緑三法の制定について, p. 8).

12) ①역사적 경관 관련 조례

문화조례(滋賀県安土町)/전통적건축물군보존조례(岐阜県白川村)/明日香村정비기금조례(奈良県明日香村)/경관보존조례(岡山県新庄村)

② 자연경관 관련 조례

하천을 아름답게 하는 조례(熊本県 菊池川 유역)/삼림불벌조례(山形県 長井市)/토지보전기금조례(北海道 斜里町)/아름다운 별밤을 지키는 방해 불빛 방지조례(岡山県 美星町)/기후그림방울(岐阜県 谷汲村)/자연생태계농업추진조례(宮崎県 綾町)/고향 삼림되살리기에 관한 조례(長崎県 世知原町)/광·식물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岐阜県 七宗町)/경관을 지키는 조례(鳥取縣 日南町)

③ 농촌·지역경관 관련 조례

<복합형> 풍경조례(滋賀縣)/조목과 경관의 기금 조례(廣島縣)/고향경관을 지키고 가꾸고 만드는 조례(群馬縣 甘樂町) 등
<환경정비형> 시가건축경관조례(山形縣 金山町)/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협정(滋賀縣 愛東町 市市原지구) 등
<문제해결형> 환경보전조례(沖繩縣 恩納村)/정감있는 마을만들기조례(大分縣 湯布院町)/종합환경보전조례(神奈川縣 城山町) 등

13) 장려수단이란, 조언, 조성, 유도, 조정, 계발, 참가를 가리키는데, 이는 농촌경관의 보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14) 복합형은 ‘전체적 차원의 경관’을, 문제해결형은 ‘구체적 경관문제에 대한 해결’을, 환경정비형은 ‘각 경관요소의 정비나 환경관리’를 의미한다.(농촌지역활성화 종합계획조사, 1993, 사단법인 농촌개발기획위원회, pp.13-14)

일본 각 국가기관의 농촌경관관련 주요 사업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주도하도록 하여 국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다양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각 사업별 목적 및 사업개요, 사업주체, 대상지역 및 보조요건과 보조율 등에 대해서 아래[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6] 농촌마을 정비관련 마을단위 주요 사업의 개요

사업	담당	목적 및 사업개요	사업주체	대상지역·보조요건	보조 등의 내용
마찌나미환경정비사업	건설성 주택국 시가지건축과 환경정비실	·기성주택지, 농촌어촌집락, 역사적 마을 등에 대해 마찌즈쿠리 협정을 체결한 지역에 양호한 마을형성을 위한 활동, 계획책정, 도로, 경관, 마을정비 등에 의해 여유와 안정감이 있는 住宅地 형성 도모 ·이전까지의 '지구주환경종합정비사업'과 '마찌나미정비촉진사업'이 1993년도에 '마찌나미환경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창설된 것	지방자치단체	·마찌나미환경정비촉진구역으로써 아래 세 가지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며, 1ha 이상의 구역 a. 조례 등에 의한 경관형성 도모 구역 b. 집도불량주택률이 70%이상, 주택밀도(공공용지, 공장부지 제외)가 30호/ha 이상의 구역(지구의주도로에 접하는 주택은 산입하지 않음) c. 폭원 5m 이상의 도로 연장이 원칙적으로 구역내도로 총연장의 1/4 미만이고, 공원 광장 녹지 등의 면적이 원칙적으로 3% 미만의 구역 ·사업실시지구 ·1993년도 말까지 65개 市區町村에서 실시	·보조율 ·협의회 활동비의 1/2, 담 등의 이전설치, 수경시설정비비 등에 1/3, 지방공공단체 1/2 ·보조금 이외의 재정조치 ·보조가 미치지 않는 市町村 부담에 기채(기채)(75%, 縣 및 政令市에는 70%)가 붙는다. ·협의회, 주민 등에 대한 보조율 ·사업주체가 여러 가지로 보조하는 비용이 대상.
주택마스터플랜	건설성 주택국 주택건설과	·1994년도 창설 ·지역 특성을 근거로 질 높은 주거공간 정비, 지역발의와 창의에서의 주거공간만들기의 실시, 지역주택문화 및 지역주택생산 등의 광범위한 주택정책의 전개하는 것	지방자치단체 ·지방주택공급공사 등	·사업주체가 지방공공단체인 경우는 국가가 1/3 보조 ·사업주체가 지방주택공급공사 등인 경우는 국가가 1/3, 지방공공단체가 1/3 보조 ·보조금 이외의 지원조치 ·주택마스터플랜에 기초한 주택금융공고(주택금융공고) 등 융자 우대조치가 있음.	·주택금융공고의 융자를 받는 경우는 HOPE주택의 건설기준작성 필요 ·지역특유의 자연환경, 전통문화를 활용한 개성있는 주거공간만들기, 마찌즈쿠리를 목적으로 1993년 까지는 200개의 市區町村에서 계획 책정되었으며, 사업계획 중에서, 역사적 경관정비에 관련된 사항을 테마로 포함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이 특징
후루사토(고향)만들기사업	자치성 자치대신관방기획실	·인재육성, 이벤트 개최 등의 소프트 사업 및 시설정비 등의 하드 사업 등 다종다양한 사업이 널리 주민 참가와 함께 실시 ·후루사토(고향) 창생의 확실한 정착, 명확한 지역만들기의 이념과 테마에 기초한 사업의 중심적 추진, 풍요와 여유를 실감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실현	지방자치단체	·일반단독사업체(일반사업) 및 후생복지시설 정비사업체대상사업(사회복지사업 및 숙박휴양시설 제외) 중, 자주적, 주체적인 지역만들기 도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지역의 종합적 정비를 위한 근간이 되는 사업 또는 모델사업으로써,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드웨어 사업에는 지역종합정비사업체, 후루사토만들기사업분(총당률 75%)의 허가, 그 원리 상환금은 후년도, 재정력에 따라 그 30~55% 상당액에 교부세 부과 조치, 대상사업비의 15%에 대해서는 해당사업년도에 교부세 부과 조치 ·소프트 사업에는 인구규모, 제1차산업종사자비율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른 교부세 부과 조치
지역개성형성사업	국토청 지방진흥국 지방도시정비과	·행정과 지역이 일체가 되어 사업이 추진되며, 지역만들기 아이디어 대회 표창, 지역만들기 교류회의 등의 개최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지역만들기 활동에의 참가와, 지역간 교류를 촉진하고 있는 사업 ·지역 교류의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주체성과 창의를 축으로 한 개성이 풍부한 지역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市町村이 행하는 시설정비 및 지역활동 등을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 ·A타입 및 B타입 구분추진 - A타입(1989년 창설) : 지역개성형성 추진프로그램 책정, 각종 시설정비 등 하드한 사업, 계몽 및 홍보활동 등 소프트 사업을 여러 해 동안 추진 - B타입(A타입의 보완으로써 1990년도 창설) : 지역개성의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시설 정비 등의 하드한 사업, 지역간교류, 인재육성, 각종 지역만들기 활동 등의 소프트 사업을 단년도로 추진하는 사업	·市町村에 대해서는 1/3 이내로, 市町村 부담분은 일반단독사업체(총당률 75%)로 조치
농촌종합	농림수산성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이것과 관련된 있는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종합적	현(縣),	·농업진흥지역 구역내에서 토지이용, 농업생산 동향, 사회자본정비상황에서, 해당정비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포장정비, 농업용 용배수시설정비, 농도정

정비 사업	구조 개선국	으로 실시하면서, 도시와 농촌교류 촉진을 위한 조건정비를 행함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촌생활환경기반정비, 농촌교류기반정비, 특별인정, 고복지형, 긴급방재형, 정보기반시설 정비형, 농용지등 관리보전형	시정촌, 토지 개량구 등	에 의해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교류기반 등의 정비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것이 적당한 구역	비,농용지개발 등) ·농촌환경기반정비(농업 생활도로정비,농업생활배수시설 정비,영농음압용수시설정비 등) ·농업교류기반정비(용지정비, 커뮤니티시설,경관보전,정보기반,집락농원 등) ·특별인정사업 ·보조율-내륙지·북해도·離島50%, 沖繩2/3, 奄美52%
지역 환경 정비 사업	농림 수산성 구조 개선국	·농업농촌정비사업의 환경정비 사업과 이를 보완하고 지역전체로써 추가적으로 실시해야만 하는 환경정비에 관한 사업을 市町村이 수립하는 ‘농촌환경정비계획에 포함’하고, 자연환경 및 농촌경관보전을 고려한 정비를 종합적, 일체적으로 행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지역환경 형성 및 농촌 활성화에 이바지	都道府県 市町村 등	·농촌환경정비계획이 책정되어 있는 市町村 일 것	·농촌수변공간정비, 농촌녹지공간정비, 농촌환경정비, 생태계보전공간정비 ·보조율 - 내륙지·북해도·離島 50%, 沖繩2/3, 奄美 52%, 중산간 55%
전원 정비 사업	농림 수산성 구조 개선국	·농촌이 갖는 풍요로운 자연, 전통 문화 등 다면적 기능을 재평가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각종 공익시설 및 아름다운 농촌경관 등의 보전과 복원에 배려한 정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의 흐름 창조에 이바지하는 가로 정비 등을 종합적 ‘전원정비구상’으로 하여, 생산시스템 재구축과 매력있는 전원만들기에 의한 도시와의 공생을 긴급히 추진	都道府県 市町村 등	·연장 1km(중산간지역 0.8km)이상의 농어집락도로 등(집락내도로도 포함) ·우측 (1), (2) 사업 중 하나 이상의 공종을 병행하는 것	(1) 공공공익시설용지정비 (2) 전통적 농업시설 등의 정비 (3) 전원교류기반의 정비 ·보조율 - 내륙지·북해도·離島 50%, 沖繩2/3, 奄美 52%
수환 정 정비 사업	농림 수산성 구조 개선국	·농촌지역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수로, 댐, 용수못 등의 농업수리시설의 보전관리 또는 정비와 일체적으로, 시설이 갖는 수변공간 등을 활용하고, 풍요롭고 윤택함이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창조	市町村 등	·사업계획구역내 및 그 주변 자연적, 역사적 조건 및 그 지역 관련 다른 지역계획 등에 의한 사업 실시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사업에 의해 정비한 시설정비의 적절한 유지관리가 행해진다고 인정되는 것 ·총 사업비 5천만 엔 이상	·보조율 50/100
집락 지역 정비 사업	농림 수산성 구조 개선국	·농업집락 및 그 주변에서 농지 등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질서있는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농용지 정비와 함께 비농용지를 토지개발사업 환치수법을 이용하여 염출하고, 아울러 집락 생활환경 정비를 행함	都道府県 市町村 토지개발구 등	·농업기반정비기본계획 및 집락지역정비사업 계획이 작성되어, 농용지 보전이용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체결예정 지역으로 집락토지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할 것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촌생활환경기반정비, 집락농원기반정비, 집락토지기반정비, 특별인정사업 ·보조율-내륙지·북해도·離島50%, 沖繩75%, 奄美55%
농촌 자연 환경 정비 사업	농림 수산성 구조 개선국	·농촌지역이 갖는 국토보전 및 환경보전이라는 다면적 또는 공익적 기능을 발휘시키기 위해, 농업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정비를 생태계 보전에 배려하면서 행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상과 풍요로운 환경의 농촌공간 형성 촉진	都道府県 市町村	·농촌지역환경정비구상에 따라 정비계획이 책정되어 있을 것 ·농업생산기반 및 생활환경기반정비가 완료 또는 예정이거나 또는 생태계보전 관점에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실시에 의해 풍요로운 자연환경의 농촌공간형성에 이바지하는 지역·실시에는 지역주민의향이 충분히 반영되고, 관계자합의가 되어있을 것	·농촌수변공간정비사업, 농촌녹지공간정비, 농촌환경정비, 집락농원기반정비, 생태계보전공간정비, 특별인정사업 ·보조율 50/100
신 아름다운 무라즈쿠리 특별 대책	농림 수산성 무라즈쿠리대책실 (구조개선국)	·1992~1993년도 ‘아름다운 무라즈쿠리특별대책’ 사업 완료 후, 1994년 도부터 시작된 사업 ·생활환경이 정비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갖는 전통 및 문화가 풍부한 농산어촌, 약자가 정주하는 쾌적한 농산어촌의 정비를 취지로, 모델지구를 인정하고, 기본구상, 공공사업, 비공공사업을 주요 골자로 한 사업	지방 자치 단체	·기간이 되는 생산기반이 상당히 정비되고, 이후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정비와 함께 경관형성 및 환경 등에 배려한 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풍부하고 아름다운 생산 및 생활공간의 모델로 된다고 예상되는 지구 채택	·대상 市町村에 대해, 여러 모델 사업의 요강 등에 의한 보조율이 정해지고, 기본구상 책정 경비 등 보조 ·모델사업에는 구조개선국, 임야청, 수산청 등의 여러 공공 및 비공공 사업이 있음 ·모델로 인정된 市町村은 기본구상을 설정하고, 기본구상에 기초한 각 국 및 각 청의 특별대책사업(모델사업) 실시 사업의 특징 - 기본구상이 책정되어 있을 경우 하나의 지구에서 공공

					및 비공공사업이 동시에 실시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며, 村만들기대책실을 창구로 하여 각 국 및 각 청의 여러 사업이 실시된다는 점
농촌 활성 화주 환경 정비 사업	농림 수산성 농촌 진흥국 농촌 정비과	·1991년부터 시작 ·포장정비 등에 의해 적정한 비농 용지의 창출을 행하고, 그 용지를 주택조성지로써 정비하고, 주변기존 집락과 일체적으로 집락도로 및 집락배수 등의 생활환경정비를 행하는 것으로, 지역의 정주화추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	지방 자치 단체	·토지개량법에 기초한 대략 20ha 이상 포장정비를 행하거나, 주환경정비 실시에 필요한 비농 용지 창출가능한 것,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것(일체적 정비는 지구 외에서도 가능) 채택 ·대상사업-농업용용배수시설, 농지조성, 농도, 구획정리, 암거배수, 객토, 토층개량, 토양개량, 환지, 농지방제, 농지보전, 지목(地目)전환, 영농음압용수(營農飲雜用水), 농업집락도로, 농업집락배수우수 등	·사업비는 국가부담 50%, 県부담 25%, 市町村 25%를 보조

*이 표는 다음 참고문헌의 관련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
 - 作山 康(2000), “お奨め補助事業一覽”, まちづくり事業企画マニュアル, 造形別冊 2, 東京: 建築資料研究社, pp.51-61의 표
 - 藁田 ひろこ(1995), “各地で進められている歴史的景観整備の事業”, 都市の歴史とまちづくり, 編集:大河直宮, 京都:学芸出版社, pp. 149-164

1.4 소결

이상과 같이 일본은 국가적 수준 혹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농촌경관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련 사업들의 경우, 국가는 보조와 지원을 담당하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분석하면서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에 비해 지방자치제도가 일찌감치 정착된 일본은, 국가는 농촌경관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커다란 밑그림을 작성하고,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top-down형식의 획일적인 성격을 갖는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는 다른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례 고찰

일본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 고유의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 이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경관조례의 형태이다. 즉, 지역 특성 및 실정에 맞는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성공적이고 특징적인 사례인 金山町과 神戸市の 농촌경관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2.1 야마가타현(山形県) 카네야마마치(金山町)의 경관 보전 및 활용

야마가타현의 1.7%에 해당하는 면적 약 160km²의 작은 마을로써, 마을면적의 약 65%가 산림지역에 해당하고, 인구는 약 7400여명 정도에 해당하며, 패전 후의 임업쇠퇴와 외산목재수입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이 악화된 농촌마을이었다. 그러나,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이 없는 金山町에서는 목재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단서가 된 일련의 사업과 이벤트를 함께 조합하여, 최종적으로는 임업진흥과 주거

환경정비까지 동시에 달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약 30년 전부터 독자적인 마찌즈쿠리를 추진해 오고 있는 이 작은 농촌마을은 여러 상¹⁵⁾을 수상하기에 이르고 있다.

(1) 경관 보전 및 활용 체제

크게 4가지 중요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金山型 주택건축공쿨, 마을경관만들기 100년 운동, 金山町 지역주택계획(HOPE계획), 金山町 마찌나미 경관조례가 그것이다.

1) 金山型 주택건축공쿨

① 개요

주택보급과 金山목공의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1992년부터는 응모된 주택과 주위의 환경 및 경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행하고 있다. 이는 金山町 마찌나미 경관조례의 자주적인 ‘카네야마형 주택에 의한 마을만들기’의 기초가 되며, 아름다운 경관만들기의 전개과정의 기초만들기로부터 개념만들기까지의 ‘교량적 시책’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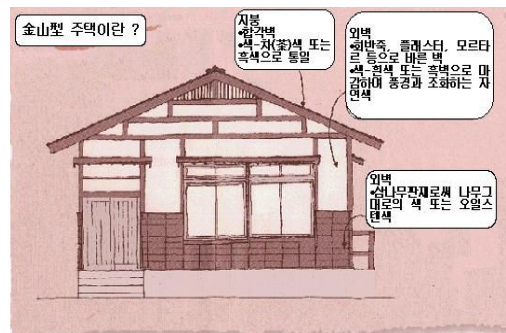
대상 및 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모가미지역(1市4町3村)에 건축된 주택으로, 金山町民 또는 金山의 공무점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지은 것을 응모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사과정 및 평가방법은 응모자 자신의 자주심사(제1차 심사)를 거쳐 응모된 것에 대해서, 배치 및 평면계획, 소재선택, 기술, 마무리, 形, 색채 등에 대해서 100점 만점의 감점방식으로 평가한다.

2) 마을 경관만들기 100년 운동

1983년 책정된 '신金山기본구상' 중에서 '마을가로(경관)만들기 100년 운동¹⁶⁾'을 기간 프로젝트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사람과 자연의 관계 만들기(사람과 자연의 공생 만들기 추진), 둘째, 아름다운 마을가로 형성과 CI화를 통한 지역의 개성화 추진, 셋째, 지역풍토, 地域材, 재래공법 등, 삼나무를 중심으로 한 지역자원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이 운동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金山型 주택’으로, 흰벽과 합각벽이 있고, 재래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이며, 金山에서 자란 목재 및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여, 기후풍토에 맞는 주택이기도 하며, 수년이 경과해도 ‘아름답고 옛스러운’ 소재이자 지구의 환경에 맞는 주택을 가리킨다.



[그림 3] 金山型 주택의 특징

*金山町 홈페이지 <http://www.vega.ne.jp/~kaneyama>

15) 경제동우회, 제1회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상’(1986), 국토청 및 (재)농촌개발기획위원회, ‘농촌어메니티공쿨’ 우수상(1989), 농림수산성 및 (재)21세기 마을만들기塾, ‘활력있는 아름다운 마찌즈쿠리공쿨’ 최우수상(1991) 외 다수.

16) ‘100년 운동’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음

3) 金山町 지역주택계획(HOPE계획)

金山町에서는 1984년에 책정되었으며, 양호한 주택시까지 형성 / 지역주택문화의 형성 / 지역주택산업의 형성이라는 3가지 시점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삼나무림과 겨울에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마을의 풍토와 金山삼나무를 충분히 사용한 목조주택을 아름다운 경관형성의 주체어로 정하여, 마찌즈쿠리의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림 4] HOPE계획으로 제안되어 실현된 주택
*八甫谷邦明(1998), p.162

4) 金山町 마찌나미경관조례17)

경관조례의 5가지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개성이 풍부한 마을가로 만들기, 둘째, 자연의 아름다움 유지 및 증진, 셋째, 새로운 마을가로 만들기, 넷째, 쾌적한 마을만들기, 다섯째, 긍지를 갖는 마을만들기이며, 행위제한 내용으로는 마을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벌칙규정은 없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마찌나미경관형성구역18)과 경관형성특정지구19)이며, 경관형성구역의 경관형성기준은 각 지역별로 만들어지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위치, 의장, 건축물 이외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담, 수로 등이 세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형성기준 적용범위는 金山町 전역이다. 또한, 이 조례에 기초하는 ‘조성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형성기준에 합치한 건축을 할 경우 최대 50만 엔의 조성금을 교부20)하여 경관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2.2 神戸市の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존 사업

神戸市에서는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쾌적한 농촌공간 형성을 목적으로, 고베시내의 농업 농촌지역을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존’으로 정하고, 농업 진흥 및 농촌활성화와 조화를 이루고, 시민 상호간의 친숙함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존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1)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존 조례

이 조례는 질서있는 토지이용의 계획적 추진, 농촌다운 경관보전 및 형성, 사토즈쿠리(里づくり)21)협의회에 의한 사토즈쿠리계획의 작성 등을 통해 농촌환경 정비, 자연과의 조화, 쾌적하고 매력이 넘치는 농촌공간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조례의 개요

17) 1986년 3월에 제정되고, 1996년에는 기존 조례의 개념이 보다 확대된 ‘金山町の 풍경과 마찌나미경관조례’로 개정되었다.

18) 전체적인 건축물 등의 질적 향상을 목적하는 용도지구

19)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경관유도를 행하는 지구

20) 2001년도에 교부된 조성금 교부액은 20,010,000엔이며, 같은 해 교부된 조성금 총액은 124,766,000엔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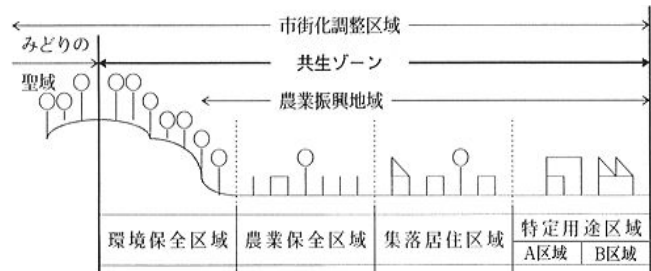
21) 사토즈쿠리라 함은 농산어촌 지역의 마을을 의미하는 里(사토)를 대상으로 하는 마찌즈쿠리를 의미

질서있는 토지이용의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농촌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보전과 형성을 위한 시책으로 농촌경관보전형성지역의 지정,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활성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토즈쿠리(里づくり)협의회 및 계획 등을 조직 및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진척상황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존 정비 기본방침’을 책정하여 공생존기본계획, 농촌용도구역 지정기준, 토지이용기준, 농촌경관보전형성기본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생존을 지정하였는데 2003년 11월 14일 현재 구역면적 17,776ha가 공생존으로 지정되어있다.

이러한 공생존 전역을 4개의 농촌용도구역²²⁾으로 지정하고, 구역내에서 새로운 토지이용을 행하려고 하는 경우, 착수 30일 전까지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촌경관보전형성지역으로는 처음으로 寺谷농촌경관보전형성지역을 지정하였으며, 寺谷농촌경관보전형성지역에 관한 경관보전형성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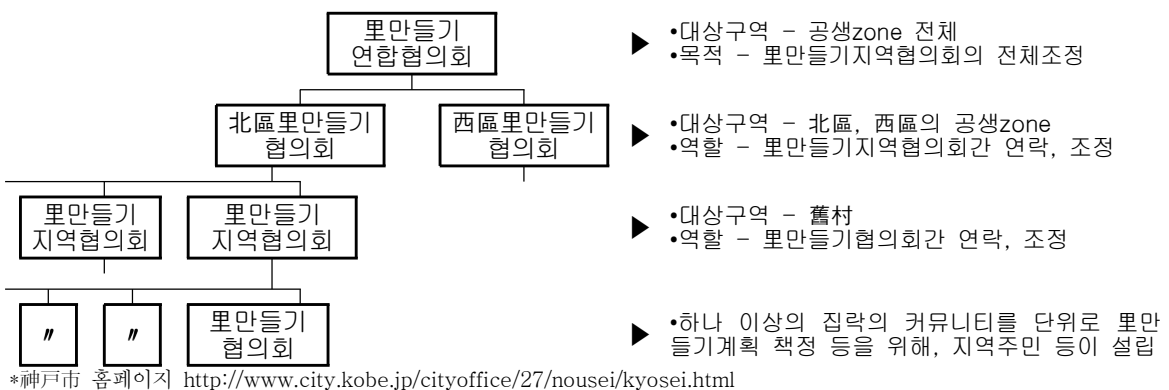
[그림 5] 농촌용도구역 구분 및 개념도

*神戸市 홈페이지 <http://www.city.kobe.jp/cityoffice/27/nousei/kyosei.html>

(4) 사토즈쿠리사업의 추진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綠이 풍부하고 활력 있는 농촌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민이 주체가 된 사토즈쿠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토즈쿠리사업은 하나 혹은 다수의 집락커뮤니티단위로 농가만이 아닌 지역주민 등도 구성원으로 하는 ‘사토즈쿠리협의회’를 설립하고, 지역의 장래계획을 책정하고, 쾌적한 농촌만들기를 진행한다(표 7 참조).

[표 7] 사토즈쿠리협의회 구성



22) 농촌용도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농업보전용도구역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구역구분	농업보전	환경보전	집락거주	특정 A	특정 B	합계
면적(ha)	8,950	8,343	254	147	82	17,776

* 2003년 11월 14일 현재. 도시계획구역 55,061ha, 시가화조정구역 35,150ha

1) 사토즈쿠리협의회 설립 및 계획책정상황

협의회는 하나의 집락 혹은 둘 이상의 집락에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협의회수와 집락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표 8] 사토즈쿠리협의회 설립 및 계획책정상황

(2003년 11월 14일 현재)

행정구역	전체 집락수	협의회 설립상황		계획책정상황	
		집락수	비율	집락수	비율
북구	65	62	95%	30	46%
서구	99	90	91%	41	41%
합계	164	152	93%	71	43%

*神戸市 홈페이지 <http://www.city.kobe.jp/cityoffice/27/nousei/kyosei.html>

2) 사토즈쿠리 계획의 내용

사토즈쿠리 계획에는 모두 5가지(농업진흥에 관한 계획, 환경정비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경관보전 및 형성에 관한 계획, 계획지구와 시가화조정구역과의 교류에 관한 계획)가 포함된다. 특히 농업진흥 및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계획은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합의가 어렵다고 여겨져 온 토지이용계획은 선택적 사항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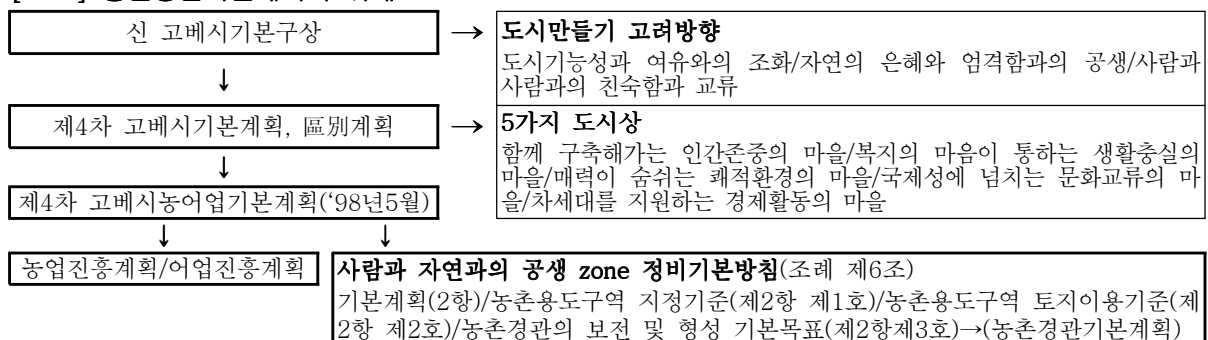
3) 사토즈쿠리 계획 책정과정

사토즈쿠리 계획 책정작업은 매 5년마다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 작성시 西區와 北區에 있는 농정사무소가 담당한다. 농정사무소 직원은 여러 지구를 담당하며, 이때 어드바이저 형태로 대학교수가 함께 파견된다. 파견비용²³⁾은 시에서 부담하며, 대체로 1개 지구당 20만엔 정도의 금액에 불과하다.

(5) 농촌경관형성기본계획

기본개념으로 시민과 시가 협동하여 다음 세대에 '고베시민의 마음의 고향'을 지키고 전달하기 위하여, '고베다운 농촌경관을 지키고, 만들고, 키운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농촌경관기본계획의 위계를 보면 아래[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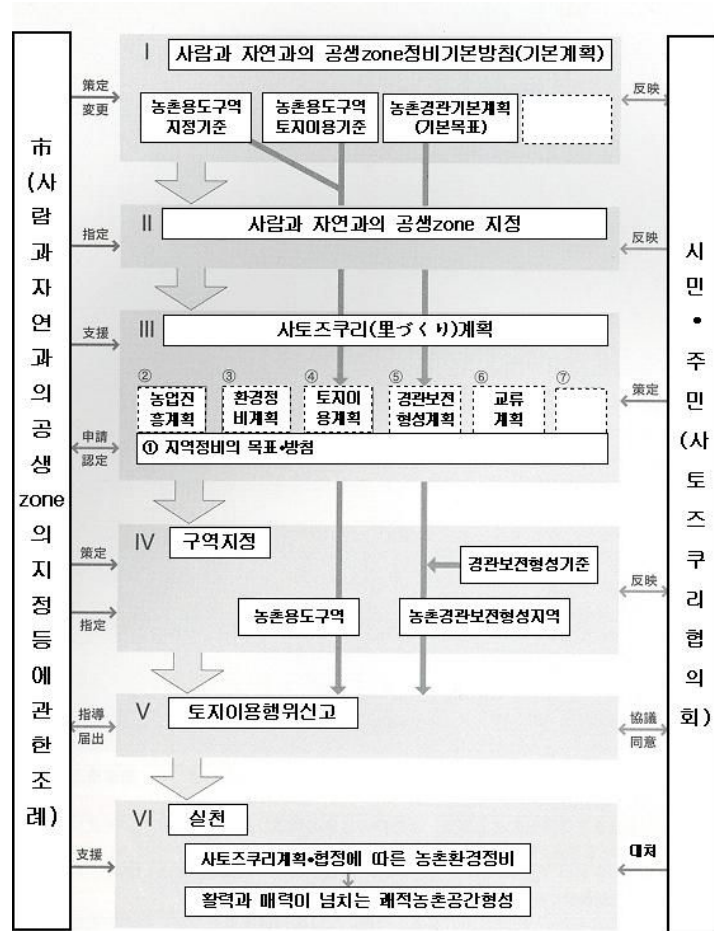
[표 9] 농촌경관기본계획의 위계



*神戸市 홈페이지 <http://www.city.kobe.jp/cityoffice/27/nousei/kyosei.html>

23) 1회 파견시 2만엔이 지급되며, 1개 지구당 1명의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베시의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존 조례에 의한 농촌경관의 보전과 형성에 관한 흐름을 다음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 행정과 사토즈쿠리 협의회의 협동의 흐름

* 兼田博雄(2000), 条例の内容と現行制度, 造景 No. 29, p.67의 그림 1 재인용

3.3 소결

이상과 같이 일본의 神戸市와 金山町の 농촌경관보전 및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고베시의 경우는 중심시가지 배후에 있는 교외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구분에 의한 농촌정비를 행하고, 아울러 농촌경관보전형성지역을 지정하여 경관을 보전하고 있다. 게다가 사토즈쿠리협의회라는 지역주민 주체의 협의체가 마을의 미래를 구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토즈쿠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에 金山町의 경우는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가꾸기 위해 주택콩쿨과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여 경관을 주제로 하는 마을만들기를 행하였다.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한다는 것이 반드시 관광개발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적으로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VI. 한국 자원취약농촌에서의 경관의 보전 및 활용 현황

1. 관련 정책 수립 현황

1.1 국가수준

현재 국가 수준의 경관 관련 법률의 대표적 사례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설명서 제작 시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의 토지이용계획에도 경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다르게 농산어촌을 초점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정은 농산어촌의 경관 보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된 것이다.

그리고, 경관보전협약체결의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은 농산어촌지역의 경관보전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것이 농산어촌의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경관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자치제의 대두로 인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특색을 살리는 개발을 위해 2001년 이후 제정된 법률로는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소도읍중합육성법 등이 있다. 이러한 농촌경관과 관련한 국가 수준에서의 제도적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경관관리 관련 법률 제정현황 및 내용

구분	관련 법률	주관 부처	관련 내용	비고
경관관리 법률적 근거	국토기본법 (2002.2.4)	건설 교통부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2장)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2장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 6.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 10.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 5.지역안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2장제8조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 한법률 (2004.2.4) 시행령 (2002.12.16)	건설 교통부	(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1의 6. 경관에 관한 사항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1의 1. 경관지구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의 6. 경관계획 (령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2의 1. 경관지구 가.자연경관지구 나.수변경관지구 다.시가지경관지구	이외에 기존의 미관지구, 보존지구, 최고고도지구 등이 관련됨
	자연환경보 전법개정안 (2004.4)	환경부	(제13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②자연경관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자연경관의 보전·관리 (제38조)자연경관의 보전 (제39조)자연경관보호구역 - 2의 1 자연경관특별보호구역	②자연경관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평가 2. 자연경관 여건변화 및 전망 3. 보전목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매우 수려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곳 - 2의 2 자연경관관리구역 : 특별보호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연결하고 있는 곳으로서 이 지역의 효율적 보전과 바람직한 이용·접근 등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곳 (제40조)자연경관마을 지정 (제43조)자연경관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제44조)자연경관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48조)자연경관보호구역의 주민지원 (제49조)자연경관영향 검토 및 심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자연경관보전 구상 및 추진과제 5. 지역지정 및 보호관리 6. 자연친화적인 자연경관 보전 및 이용관리 7. 자연경관 보전사업 소요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도보존에 관한특별법 (2004.3.5)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의1의1)역사경관 관련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 (제8조의1의2)역사문화환경지구 - 특별보존지구의 주변 지역중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9조)고도보존계획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2004.3.5)	농림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의1의5)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제30조)농산어촌 경관보전 -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마을 단위로 농산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4.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보전활동, 농산어촌관광,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검색하여 필자 재정리

1.2 지방자치단체 수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련 조례 제정 수는 증가일로에 있다. 현재 16개의 상위 지방자치단체중 3개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가 4개의 조례를, 227개의 하위자치단체중 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아래의 [표 11]은 우리나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련 조례 제정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경관관련 조례’라 함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의 명칭 중 ‘경관’이란 단어가 포함되거나, 명칭에 없더라도 해당 조례의 대상이 경관을 의미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²⁴⁾도 모두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는 고창군의 ‘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조례’를 제외하고는 농촌경관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하위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경관조례의 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수준의 경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24) 예를 들면 경기도 부천시외 도시개성형성조례, 인천광역시의 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 등이 있다.

[표 11] 하위 자치단체 경관 관련 조례제정 및 경관계획 수립 현황(2004.9.30. 현재)

		경관 조례	동시행 규칙	비고	경관계획		
		40/227	6/227	제정된 조례의 수/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수	수립	수립중	예정
1	경기도	4*/31	3/31	*자연경관보전조례 3개(김포시, 가평군, 양평군) / 도시개성형성관리조례(부천시)	용인시 경관형성기본계획/안산시 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안양시 경관관리 기본계획/과천시 경관관리 기본계획(총 4개)		
2	강원도	11*/18			영월군 경관형성기본계획/춘천시 경관형성기본계획(총 2개)	속초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양구군 경관형성기본계획	원주/강릉/횡성/평창/화천/고성
3	충청북도	2*/11	1/11	*자연경관보전조례 1개(보은군)	청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총 1개)		
4	충청남도	1*/16		*자연경관보전조례 1개(서산시)			
5	전라북도	8/14		*자연경관보전조례 7개(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조례			
6	전라남도	2*/22	1/22	*자연경관보전조례 2개(강진군, 고흥군)			22개 시군 예정
7	경상북도	2*/23		*자연경관보전조례 2개(상주시, 영덕군)			
8	경상남도	9*/19	1/19	*자연경관보전조례 9개(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산청군, 회령군)	진주시 신축건물 고도조정 및 경관기본계획/마산시 경관관리 계획/마산시 진동 시가지 고도조정 및 경관기본계획 연구/창원시의 도시폐선화를 위한 색채환경 연구/김해시 도시경관 계획에 관한 연구(총 5개)		
9	제주도	1/4			제주시도시경관기본계획(총1개)		
비고		*는 해당 지자체의 전체 경관관련 조례 갯수 중 '자연경관조례'의 갯수만 표기하였으며, 현재 25개의 자연경관보전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경기도 부천시의 '도시개성형성관리조례'와 같은 행사부 분류 '특색조례'도 있음			총 13개의 경관계획 수립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검색하여 필자 재정리

(1) 강원도 경관정책 및 경관형성조례²⁵⁾

전국 최초의 경관형성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경관을 고려한 법제도적 체계를 구축한 지방자치단체이다. 강원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1997년에 수립하였고, 1996년에는 강원도 경관형성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2001년에는 강원도 경관주택 건축권장요령을 제정하였고, 경관유형²⁶⁾별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경관을 고려한 시범사업 및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관을 고려한 지방도 및 군도 사업, 도시가로환경정비, 풍치가 있는 하천정비(경관하천 조성, 소하천 정비), 강원도

25) 강원도 도시계획과 내부자료

26) 6개 분야 : 개발행위편람, 도시경관, 하천, 주택 등 경관형성기준 및 편람

형 경관마을 조성, 자연경관에 조화된 주택개발 사업이 그것이다. 그 외에 도시미관을 위한 간판 시범정비 지구지정(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및 공공사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관형성관리 추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²⁷⁾를 부여하고 있다.

(2) 고창군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조례 [2004. 7.31 조례 제1659]

이 조례는 주 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도시민과 도시자본을 농가소득원에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여가, 휴가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세부내용에는 경관관련 용도지구로서 경관농업조성지구와 자연경관보전지구를 규정하여, 이 지구지정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직접직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경관 농업지구’는 군수가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의미하며, ‘경관 보전지구’는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곳을 의미한다. 또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경관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고창군 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조례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례나 법들과 달리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에 초점을 두어 만들어진 조례라는데 그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3 국가기관의 농촌경관 관련 주요 사업

농촌마을 재정비와 관련된 주 사업 프로그램으로는 [표 12]와 같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지원사업, 아름답마을가꾸기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은 농촌 마을의 경관 보호 및 가치 증대 차원을 인식하고 언급하고 있으나 농촌의 인프라 공급에 치중한 물리적 개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중심 마을 육성을 통한 취락체계 개선을 지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취락의 내부구조(생활환경) 개선에 그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부처들간의 유사 사업의 시행은 전담부처도 행정자치부, 농촌진흥청, 농림부, 산림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범 농촌 정책 차원에서 각 부처의 목적 하에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사업 지정 시 지자체의 추천에 의해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으로, 자연·문화·역사·생활자원이 특징적인 마을들이 추천되고 있으며, 지정된 마을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에 추천 받게 되고 있어, 농촌의 이분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중심마을을 중심으로 몇 개의 마을을 엮어 지역활성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있으나, 이에 대한 주체의 정체성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중심마을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상태이다.

27) 2001년 추진 우수기관 및 관계 공무원 표창 실시 : 3개 기관 2억원 / 2002년 계획 : 4개 기관 3억원 / 경관우수건축물 시상제도 실시 : 87년 제1회 강원도 미관우수건축물 선정 이후 9회에 걸쳐 총 50점 선정하여 표창

[표 12] 농촌마을 정비관련 마을단위 주요 사업의 개요

주관부처	사업명	대상범위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행정자치부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지원사업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한 194개 읍지역	잠재자원을 테마로 개발하여 배후 농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	개발잠재력이 높은 거점 읍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대상사업도 6~7개 분야로 집중화	4년간 100억원 지원 - 첫째에는 용역 및 보상준비에 필요한 최소비용만 지원 (읍당 5억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경쟁체제에 의해 선정된 마을	자연친화적 농촌조성, 높은 소득과정이 살아있는 지역 공동체 재건	개발잠재력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테마마을 조성, 관광자원을 활용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소득원 발굴, 도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02~'04년 15-20억원
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도에서 추천된 마을별 사업계획 설명회 및 현지실사를 거쳐 설정	주5일제 근무제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를 우치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농촌관광 추진 마을에 대해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보강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여 도시민 수용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및 소요자금 심사를 거쳐 마을당 2억원 수준에서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이상)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 31조 및 같은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 범위내의 지역	농촌다음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국토 균형발전 도모	지역실정에 따라 기초생활권, 소득확충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특성화시설 설치 지원	권역당 3년간 70억원 수준 지원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농진청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농촌마을	전통테마를 발굴 보존하여 농촌생활의 활력화 및 도농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마을	농촌전통테마(교육 및 체험시설, 체험 : 학습프로그램개발, 마을고유환경, 주민의 능력향상교육과 사업역량배양)	'02년 9억원 '03년 이후 131억원 마을당 2억원(1년에 1억원씩 2년간 지원)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경쟁체제에 의해 선정된 우수마을	정신개혁, 소득배가, 환경개선	주민숙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	'99년 50억, '00년 75억, '01년 75억, '02년 75억 마을당 5억원
산림청	산촌종합 개발사업	년간 총 10개 마을	산촌지역의 산림 및 휴양 자원의 친환경적 개발로 도시인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산촌 진흥	생활기반시설(도로, 공동관정 등) 생산기반조성(저온저장고, 농산물 가공공장, 교육장 조성 등) 소득원개발(과실수, 약초 등 식재) 주택개량(노후주택 개보수)	1개 마을당 국고보조 12억원 (국고보조 80%, 지자체 보조 20%)
해양수산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년간 8개 마을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	체험프로그램개발 체험장, 종합안내센터, 안내소, 진입로 등	1개 마을당 5억원, 1년 단위 사업(국고보조 50%, 지자체 45%, 자부담 5%)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 및 복원 우수사례 선정사업	년 총 15여개 마을	지역주민의 자연환경 보전 의식 함양, 자연자산의 자율보전·관리 장려	자연환경보전 우수마을과 복원 우수 사례 선정 및 인증서 수여	별도 지원예산 없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예산신청시 우선배정

* 농업기반공사(2004), '삶의 질 높임과 농촌자원개발 포럼' p. 31의 표 1, 농업기반공사(2003), '농촌경관주택 정책 및 마을 리모델링 방안 연구', 농림부, p.76, 문화관광부(2004), '지역가꾸기 사업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정책 토론회', pp.13-27의 내용을 필자 재정리

1.4 소결

국토에 대한 관련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있으나, 이는 폐지된 도시계획법의 체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농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경관에 관한 부분을 다루게 되어 국토의 관리와 관련한 여러 부문에서 생태, 경제, 관광 등과 같이 경관도 하나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계획

을 수립하거나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한편, 강원도의 경관정책 및 경관형성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형성조례의 제정이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조례는 자연경관 보전조례로서 자연생태환경이 우수한 곳의 보전을 명시함으로써 농촌경관과 같은 문화적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다. 현재로써는 고창군의 ‘고창군농촌관광을 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조례’를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에서 해당 농촌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제정 및 시행사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상태이다.

반면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농촌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으로 인센티브형²⁸⁾ 농촌개발 전략이 제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마을 단위의 사업이므로 구체적으로 ‘농촌 주택’에 초점을 둔 개량이나 정비를 누가 어떻게 담당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농촌마을에 대한 종합적 계획 틀이 부재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와 유도가 결여될 수밖에 없는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 그리고 중앙집권적 계획주의에 의한 하향식 개발방식의 관행과 투자재원의 부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사례 고찰

여기서는 국내 사례지로 선정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의 현황 고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을 보전하거나 활용하는 수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1 개요

현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네 가지 유형, 지역특화형, 농촌관광기반형, 친환경육성형, 전통보전형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분류는 현재 마을 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곳도 있으며, 향후 개발 사업의 방향을 이 분류에 의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내재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기본유형을 토대로 다양한 개발 유형을 복합적으로 선택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유형에 해당하는 농촌마을의 현재의 경관자원 특징이 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음을 밝혀 둔다. 각 마을의 전반적인 현황과 사업중복지정 여부에 대한 사항은 [표 13]과 같다.

[표 13] 권역별 개요 및 사업중복지정 여부

사업 유형	권역 이름	현 황	경관 수법		사업 중복지정
			보전	활용	
농촌 관광기반형	석산권역	석산2리	●	●	●
		산양1리	×	×	●

28) 인센티브형 농촌개발 방식이란 지역(마을)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말하며, 최대한 지역자원(인적·물적) 활용과 발전성과의 지역 귀속을 중요시하고 단순히 경제적 발전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양2리	•마을쉼터 조성 •곽훈 화백이 살고 있어 경기야외작가 초대전 등이 매년 개최	×	×	●
		산성1리	•문화재가 있어 문화마을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마을 이장의 관련 지식 및 관심 부족으로 2004년도 지정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대부분 석산 2리 부래미 마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	×	×	●
		복두2리	•낙동·월예단지가 대상지 안에 있음	×	×	×
		오성2리	•마을주택들은 도시적인 형태를 띠며, 폐교가 대상지 안에 존재	×	×	×
	서권역	서정리	•만향정이라는 정자와 정산향교 존재 / 정산 서정리 구층석탑	×	×	●
		역촌리	•애경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평야마을	×	×	×
		용두리	•정산에 최고령 노인들이 가장 많은 부락	×	×	×
		천장리	•천장호라는 저수지가 있음	×	×	×
		마치리	•대상지 안에 철갑산 도립공원 존재	×	×	×
지역성형	연수권역	연수1리	•돌담과 장승이 많음 / 현재 보릿고개마을이라 이름 지어 도시민 유치	×	●	●
		연수2리	•도시자본이 숙박시설·음식점에 치중, 정기 마을모임은 1~2회/년 정도 개최 •봄에 배꽃 복숭아꽃이 자랄만한한 경관으로 인식하고 있음	×	×	×
		오촌리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개발 부지의 한계점 때문에 주민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 미흡 •김병호 고가가 있음	×	×	×
	가곡권역	어의곡리	•청년회·부녀회·이장 등 주축의 마을 추진조직 구성이 견고 •마을 전체 주민을 조로 나누어 마을 쉼터 및 민박청소를 하며 공공사업으로 얻은 돈은 연말에 마을 구성원 수로 나누어 지급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공공부문은 보조하는 식의 독립체제 이룩하려 하지만 제도상 미비한 상태	●	×	●
		대대리	•약초 및 고랭지 채소 재배	×	×	×
		사평리	•한강상류 기슭에 모래언덕위에 조성된 마을 •용산골 체육공원이 있음	×	×	×
친경성형	영전권역	영전1구	•마을 안에 학교, 동사무소, 우체국 등 공공건물이 존재 •무농약재배를 통한 벼 생산	×	×	●
		영전2구	•무농약재배를 통한 벼 생산	×	×	●
		제내리		●		
	상내권역	문림리	•무농약재배를 통한 벼 생산 •호연정이라는 문화재 지정이 된 정자 가 있음 •개벼리라는 봉우리 사이의 소로	×	×	●
		상내1리	•전형적 농촌마을로서 5월8일 일년에 한번 마을 정기 축제를 개최 •각 마을 이장들로 구성 되어있으나 관련 지식은 부족 •마을에서는 전문가의 관심 요구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표고버섯 재배 •백화천 주변 계곡 수석으로 유명	×	×	●
		상내2리	•두릅, 취나물, 양봉, 자라 양식	×	×	●
		하내1리	•청장년층이 주민의 1/3 존재 •서성초등학교 현재 폐교를 개조하여 한성연수원으로 이용	×	×	●
		하내2리	•영강천에 소나무 숲이 있음	×	×	●
전통보전형	원리권역	원리	•조선시대 석계 이시명 선생과 그 후손 재령 이씨가 집성촌 형성 •석천서당, 석계고택, 주고 유물관등 전통 가옥 존재	●	●	●
		지경리	•남자현 생가 및 유적비와 이현규 독립운동기념비	×	×	●
		답곡리	•만지송과 여러 고목들이 존재	×	×	●

2.2 보전 수법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거나 특징적인 경관자원이 마을 안에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 스스로가 경관자원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며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사례 농촌마을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관자원을 보전하는 방식과 수법에 대해 고찰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중 사례지역의 경관보전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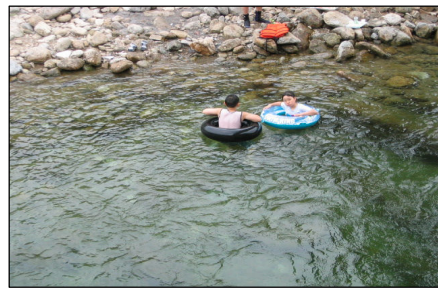
[표 14] 유형별 보전내용

유형	소재	보전내용
전통 보전형	원리권역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	전통가옥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두들 문화마을이라는 이전의 문화마을 사업과 정부 보조금으로 전통가옥의 개 보수 및 관리를 행하고 있음.
지역 특화형	계곡권역 충북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계곡 상류에 위치하여 관광객 증가로 계곡과피를 막기 위해 마을 주민 스스로 관광객 출입구역 및 보전구역을 구분하고 있음.
농촌관광 기반형	석산권역 경기도 이천 읍면 석산2리 부래미 마을	주로 안내판, 그린스쿨, 마을창고 정비 등 주로 경관을 이용한 지역활성화가 아닌 시설물을 정비한 형태에 가까움. 또한 목논을 이용한 생태공원 조성으로 자연자원을 보전 하고 있으나, 경관보전의지보다는 전문가 권유에 의해 만들어진 형식임

이외에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은 작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작품무대로서 1997년부터 행사장 주변 농가를 중심으로 메밀밭 조성에 대해 군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02년 기준으로 전체 면적 21ha(참여농가 수 30농가)에 대해 적기 파종 및 개화를 조건으로 평당 1,500원 지원을 시작하여 경관을 보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7] 고택



[그림 8] 계곡



[그림 9] 생태공원



[그림 10] 도예체험장

2.3 활용 수법

경관자원의 활용 수법은 경관자원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지역활성화에 어떻게 이용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경관자원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정과 결과가 경관자원을 이용하여 지역활성화를 이룬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중 사례지역의 경관활용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5] 유형별 활용내용

유형	소개	활용내용
농촌관광 기반형	석산권역 석산2리 부래미마을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부래미 미술대회를 매년 개최. 이는 부래미 마을로 오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며, 관광객으로 하여금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활용 수법.
지역 특화형	연수권역 연수1리	보릿고개 마을은 일반 농촌에서 흔히 자라는 호박·쭈보리·오이 등을 이용하여 호박밥·쭈개떡·보리개떡 등 보릿고개시절 먹던 음식을 재현하여 관광객을 유치. 이는 자연·생활경관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끈 좋은 예.
전통보전형	원리권역 원리	예절관, 전시관, 이문열 전시관 등의 고건물을 증축하고, 이를 마을소재 문화재인 전통고택과 연계함으로써 전통주택의 경관을 활용한 예. 그러나 전통건축물의 증축과 신축은 기존 마을과 분리된 경관을 조성.

이외에도 강원도 화천군의 광덕마을은 기존의 마을 대표 작물인 토마토를 이용하여 화악산과 연계한 ‘찰 토마토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마을에서는 팜스테이를 프로그램화하여 1박2일, 2박3일 등 체류형 관광을 도모함으로써 마을의 대표 작물인 토마토, 느타리버섯의 소비가 증대되어 지역활성화를 이루었다.



[그림 11] 미술대회수상작 전시실



[그림 12] 보릿고개음식



[그림 13] 전통가옥



[그림 14] 축제 모습

2.4 운영 체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대상지구 선정 시 선정기준에는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주민 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민과 지역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대상지구 안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장과의 인터뷰 내용들을 종합하면 농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마을사업 주도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주체의 정체성 확신 미흡
- 사업을 운영해나갈 젊은 층의 부재
- 공공부문의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불만 호소
- 생업에 피해가 가증될 만큼 마을사업에 관한 업무의 과중
-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을 추진에 대한 제도 정비 미비
- 관련 전문가와 연계된 사업의 추진방안 부재
-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 조직들의 정확한 성격 부여 및 명칭 부재
- 마을과 자매결연한 대학이나 교육기관의 전문가들이 몇몇 마을을 보조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시도도 극소수에 불과

이러한 문제들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계속 겪어 왔던 문제로서, 이는 마을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5 소결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마을사업으로 성공을 이룬 마을들조차도 그린스쿨설립, 안내판정비, 도로정비, 주택개량, 마을창고정비 등 시설물 정비위주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마을 내에 존재하는 경관자원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말하여 주는 단편적인 예이며, 마을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경관자원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마을은 그렇지 않은 마을보다 젊은층이 많이 존재 하였고, 리더가 존재 하였으며, 사업의 중복지정으로 지금 다른 마을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예전에 해결한 마을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농촌마을에서는 마을사업을 추진해갈 리더의 양성과, 젊은층의 확보, 운영조직 및 운영주체들의 정체성 확립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마을주민들의 기획력이나 홍보에 의해 만들어지고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느 농촌에서나 가능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마을 자체만의 것을 발굴해내고, 특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만의 경관자원을 마을주민들과 함께 찾아주고 토론하는 전문가의 양성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공공부문과 마을주민들과의 사업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Ⅶ. 결과 및 고찰

여기서는 한국의 자원취약농촌에서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리의 관점은 앞의 V장과 VI장에서 고찰한 한국과 일본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활성화의 기본적 고려사항과 관련 정책, 그리고 보전 및 활용수법, 운영체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지역활성화 기본적 고려사항

지역활성화²⁹⁾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기본적인 사항은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의 지역활성화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해당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농촌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역활성화 추진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즉 예를 들면, 추진목적이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인가? 아니면 경제활성화인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 발표된 새로운 농촌정책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역활성화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 지속가능한 정주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소재이자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농촌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농촌경관의 보전과 형성이 농촌경관의 관광적 활용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농업 및 농촌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지역주민을 도외시한 기존 개발방식으로 지역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2. 정책적 측면

2.1 관련 제도 정비: 「농촌경관법」 신설 필요

현재 제도적 틀 내에서 농촌 경관의 보전 및 활용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칭 「농촌경관법」의 신설을 통해 현재 전국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업들을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라는 측면 하에서 농촌경관 보전지구, 농촌경관형성지구, 농촌경관관리지구를 지정하여, 기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관련 용도지구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연계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촌경관의 보전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식과, 민간부문 참여 및 개발방식, 주민 참여 및 주민협정제도,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공적 인센티브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9) 지역활성화

•지역활성화란 용어는 모호하지만,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 이는 이 용어가 엄밀한 학술적, 과학적 용어라기보다 선언적, 정치적 용어임을 의미한다 (김창민, 2002).
•지역의 자원, 자원을 활용한 활동, 자원을 활동에 연결짓기 위한 계기라는 구성요소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개발이 지향하는 방향적 변화의 총체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한표환,1997).

2.2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업실시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역할 분담

이러한 종합적 체계 속에서 마을 정비와 마을 특성화가 다뤄질 경우, 중앙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형태의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일본에서 문화적 경관 보호를 위해 전국조사를 실시하여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은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조사 및 축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계획 및 입안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가수준의 행정기관의 역할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지역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농촌마을 경관의 보전 및 활용 시에 그 비전의 근거 마련 및 사업 지원
- 둘째, 새로운 지역활성화 자원 및 수법의 발굴 및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수단 마련
- 셋째, 농촌 지역활성화 성공사례의 분석 및 보급과, 이에 대한 교류기회의 공간조성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행착오의 감소기회 제공
- 넷째, 농촌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고려사항 및 지침의 작성과 제공을 통해 지역활성화의 효율성 제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의 작성
- 둘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활성화 사례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고취
- 셋째, 지역 고유의 경관조례 제정을 통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적 특성의 반영
- 넷째, 지역활성화를 추진체제 구성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 지역 전문가집단과의 연계 및 조정

3. 보전 및 활용 수법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같은 제도적 측면의 뒷받침이 부족하고, 국가 수준의 사업적 측면의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사업에 맞추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가 국가수준의 사업을 먼저 구상하고, 사업추진시에는 해당 지역의 실정을 잘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간섭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한 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고, 이와 함께 지역활성화와 연계시킬 있도록 하는 행정적 운영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활성화 수법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지역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많은 자원의 발굴 및 창출이 필요하다. 일본의 농촌경관백선, 아름다운 마을컨테스트 등과 같이 지역활성화 자원의 발굴 및 구축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운영적 측면

4.1 운영주체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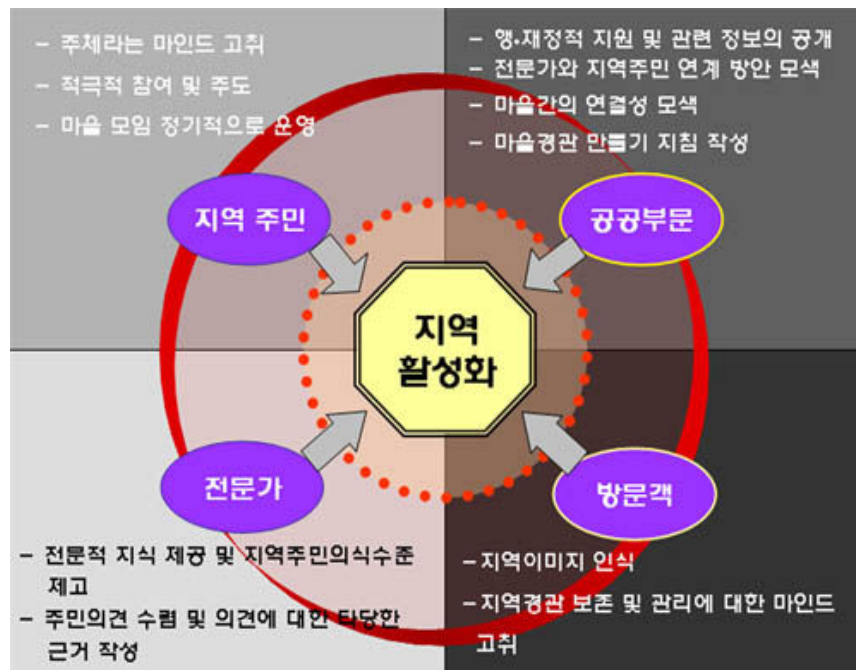
지역활성화란 기존의 국가주도의 사업시행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만 지속가능하다. 여기에는 4가지 주요 주체(주민, 공공부문, 전문가, 관광객)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주민으로써, 지역활성화의 추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둘째, 공공부문으로써, 지역활성화의 추진시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제로 하며, 행정적 절차와 재정적 지원(교부금 같은)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셋째, 전문가로써, 지역활성화 추진시 다소 추상적인 주민의 의견과 요구에 대한 논리적 근거 마련 및 수법적 전개를 담당하는 주체이다.

넷째, 관광객은 지역활성화의 경제적 측면과 마케팅 측면을 좌우하는 중요한 주체로써, 관광객이 갖는 방문이미지에 따라 지역활성화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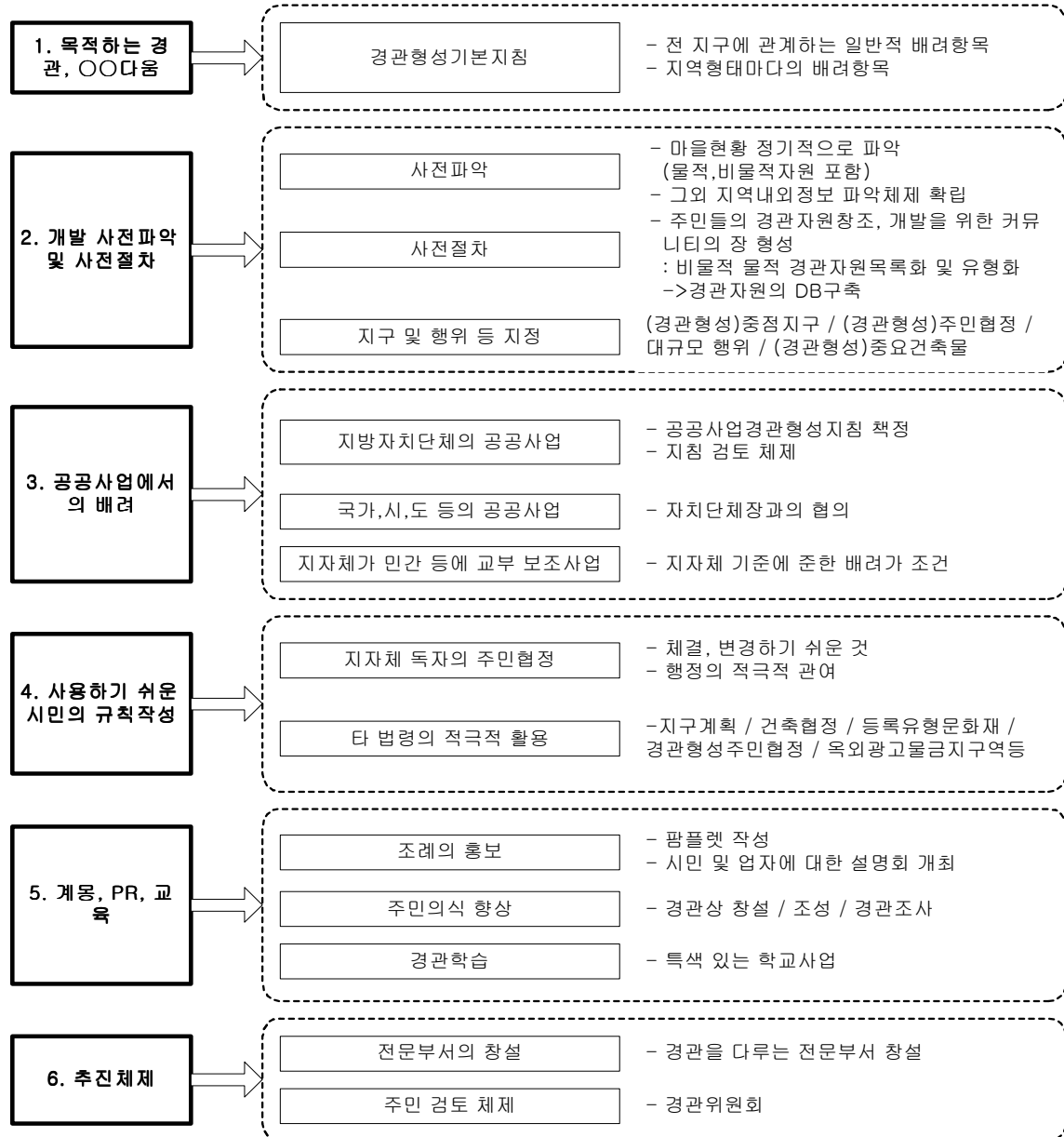


[그림 15] 농촌마을 지역활성화조직 운영체제

4.2 운영 수법

지역활성화를 위한 운영수법으로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경관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원발굴 및 목록화를 실시하며, 이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활성화의 도모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기초하여 경관계획 및 지역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경관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공공사업의 지침을 작성하여, 지역 고유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지역 주민 및 방문객에 대한 홍보를 행하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경관에 관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추진 조직의 활동에서 행정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창설이 필요하다.



[그림 16] 일본 飯田市 농촌지역활성화 운영수법과 흐름 예

*일본 飯田市 홈페이지 <http://www.city.iida.nagano.jp/kikaku/keikan/tataki.pdf>

VIII. 결론

이상에서 자원이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하므로써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사례를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국내의 경우는 아직 ‘경관’을 활용하여 자원이 취약한 농촌에서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한 사례가 극히 드문 반면, 일본의 경우는 지역주민 주도하에 해당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3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³⁰⁾는 퇴락해가는 농촌지역에서 농촌관광, 농지보전, 농촌경관보전 등에 의해 농촌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연구되어야할 주제로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자원취약농촌’에 대한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둘째, 자원취약농촌에서의 사업시행시 국가에서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셋째, 국내외 다양한 사례고찰을 통한 자원취약농촌의 지역활성화 유형 분류

올해에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단일 부서가 아닌 관련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농산어촌 종합개발 연차적 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기본계획안의 수립을 바탕으로 농산어촌의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하향식 추진이 아닌 주민주도의 상향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많이 표출되고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30)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혹은 지역특구라는 이름하에 각 국가기관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활성화 제도. 일본은 이 제도에 의해 산업, 관광, 환경, 교육, 건강, 도농교류, 마찌즈쿠리(소위 ‘마을만들기’)를 테마로 다양한 특구를 지정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참고문헌

▷ 国内文献

- 곽동윤(2002), 일본 광역도시경관행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37권 제2호: 203-215
- ” (2003), 일본 정령지정도시의 도시경관행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38권 제4호: 123-136
-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정자치부(2004), 신활력지역 발전구상 보도자료
- 김명연(1999), 주민직접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김봉원, 김유일(1997), “수도권 근교농촌의 삶의 질 평가”, 농촌계획 제3권 제1호: 77-85
- 김창민(2002), “문화적 지역활성화의 개념과 방향”, 인문과학연구 제7권: 67-81
- 김태훈(1999), 한국지방자치단체의 도시경관관리조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조경학석사학위논문
- 김한배(2004), “조경학회지 게재논문 경관분야의 연구경향”, 조경학회지 제31권 제6호: 120-128
- 농림부 농촌개발국(2003),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현황조사, 해외공무여행 보고서
- 농림부 농촌진흥과(2004),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서
- 농림부(2004), “삶의 질 높임과 농촌자원개발 포럼”
-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2003), 농촌 경관주택 정책 및 마을 리모델링 방안 연구
- 문화관광부(2004), “지역가꾸기 사업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박광서(2000), “중산간지역의 지역활성화와 그 유형”, 지역개발연구 제31권 제1호: 63-84
- 박종섭, 박경국, 류을렬(2000), “충북 조건불리지역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충북개발연구원 제11권 제2호: 265-306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서주환 외(2002), “경관계획수립 관련 법규의 비교분석”, 한국조경학회지
- 서주환, 이경식(1996), “농촌정주생활권에 있어서 경관정비계획방법에 관한 시론”, 농촌계획 제2권 제1호: 79-90
- 서주환, 최현상, 이준근(2002), “농촌경관 도입요소의 조작성을 통한 경관평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6권 제4호: 1~7
- 소순열, 유찬주(1999), “지역농업의 격차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농대논문집 제 30권: 117-137
- 송두범(2000), “조건불리지역 선정 및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회지 제10권 제2호: 31-44
- 송정기(2002),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있어서 지역조직과 전통성 재고”, 정치·정보 연구 제5권 제2호: 1-39
- 신중진(2000), “일본의 마치즈쿠리와 주민참여”, 월간 국토 3월호, 국토연구원: 22-30,
- 심상욱(2002), “일본의 도시경관조례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37권 제1호: 107-124
- 엄대호, 한경수, 전택기(2002), “조건불리지역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제8권 제3호: 15-23
- 오민근(1999), 도시역사경관보전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석사학위 논문
- 오민근(2004),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자료
- 유진채, 이희찬(2003), “조건불리지역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농업경제연구 제44권 제1호: 111-130
- 유현석 외 2인(2002), 자연경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윤근섭(1994), “과소지역의 구조와 사회적 결속에 관한연구”, 한국사회학 제28집: 85-115

- 윤원근(2003), 국토정책과 농촌계획, 보성각
- 이경기, 황재훈(2000), 충청북도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충북개발연구원
- 이상영, 長谷部 正, 野村希晶, 木谷 忍,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농촌경관평가의 한·일 비교”, 농업경영·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639-657
- 이석주, 한경수(2002), “중산간지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설정 및 유형화”, 농촌계획학회 제8권 제3호: 25-32
- 이재준, 이상문(2003),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8권 제3호: 39-55
- 이한방(2001), “과소농촌지역의 휴경요인과 유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7권 제3호: 74-90
- 임승빈 외 2인(1995),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30권 제1호: 105-120
- 정건호, 변효근, 김기홍(2004), “지속가능한 한국형 농촌관광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제16권 제1호: 85-104
- 정기환(2002),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 투어리즘의 정책 배경과 추진 방향”, 농어촌과 환경 No 75, 한국 농어촌연구원: 103-111
- 조동범(199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정책의 발달과 특징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12권 제2호: 201-216
- 최선주(1996), 도시경관 정비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최재웅, 김동엽(2003), “농촌문화경관으로서 강릉시 구정리 마을숲의 경관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8권 제4호 : 171-181
- 최혁재 · 지대식 · 최수(2003),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새국토연구협의회(2001), “농촌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 한승준, 최진수(2001), “우리나라 낙후지역선정의 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55-74
- 한표환(1997), “내생적 지역활성화의 요건과 전략형성”,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9권 제1호: 1-17
- 행정자치부(2004), ‘지방의 시대, 분권의 길’, 지방분권 특별법 해설집

▷ 国外文献

- Andy Kirby(2003), "Redefining social and environmental relations at the ecovillage at Ithaca",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23: 323-332
- Barbel Tress, Gunther Tress, Gary Fry(2004), “Integrative studies on rural landscap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Article in press
- Colin D. Meurk, Simon R. Swaffield(2000), "A landscape Ecological framework For indigenous regeneration in rural New Zealand=Aotearoa",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Vol. 50: 129-144
- Eileen O'Rourke(2003), "Socio-natural interaction and landscape dynamics in Barren, Ireland",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Article in press
- Hannes Palang, Staffan Helmfrid, Marc Antrop, Helen Alumae(2002), “Rural Landscapes: past processes and future strategi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Article in press
- kazuhiko Takeuchi, Yutaka Namiki, Hiroyasu Tananka(1998), “Designing eco-villages for revitalizing Japanese rural area”, Ecological Engineering Vol. 11: 177-197
- Paul Claval(2003), "Reading the rural landscap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Article in press

- 兼田博雄(2000), 条例の内容と現行制度, 造景 No. 29: 67
- 国土交通省都市・地域整備局(2002), 景観に関する規制誘導方策に関する調査報告書
- 国土交通省(2003), 美しい国づくり政策大綱
- 農林水産省(2003), 水と緑の '美しい村' プラン21
- 国土交通省都市・地域整備局都市計画課(2004), 景観法案について
- 国土交通省(2004), 景観緑三法の制定について
- 国土交通省都市・地域整備局公園緑地課, 国土計画局大都市圏計画課(2004), 都市緑地保全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
- 金山町 홈페이지 <http://www.vega.ne.jp/~kaneyama>
- 棚野 良明(2004), “景観法案について”. 日本都市計画学会誌 Vol. 53, No. 2: 90-91
- 野口 和雄(2002), まちづくり条例のつくり方, 東京:自治体研究社
- 農林水産省(1995), 美しい農村景観づくりへのアプローチ
- 農林水産業に関連する文化的景観の保護に関する調査研究(保護)について(2003), 月刊 文化財 No. 480: 4-62
- 社団法人 農村開発企劃委員会, 農村地域活性化総合計画調査(1993): 13-14
- 大河直宮外(1995), 都市の歴史とまちづくり, 京都:学芸出版社
- 棚野良明(2004), “景観法案について”, 日本都市計画学会誌 Vol.53 No.2: 91
- まちづくり事業企画マニュアル, 造形別冊 2, 東京: 建築資料研究社: 51-61
- 北村 貞太郎編(2003), 土地利用計画と市町村条例, 東京:農林総計協会
- 蓑田 ひろこ(1995), “各地で進められている歴史的景観整備の事業”, 都市の歴史とまちづくり, 編集:大河直宮, 京都:学芸出版社: 149-164
- 西村 幸夫(2003), 風景を市民のものに, 季刊まちづくり創刊記念討論会資料
- 西村 幸夫, 2004. 都市保全計画, 東京大学出版会
- 小高 剛(1997), “法律と条例”, 都市問題研究第49巻第3号: 43-70
- 小林 重敬編(1998), 協議型まちづくり, 計画システム研究会著, 京都:学芸出版社
- 小林 重敬編(1999), 地方分権時代のまちづくり条例, 京都:学芸出版社
- 小林 重敬編(2002), 条例による総合的まちづくり, 京都:学芸出版社
- 小山 環外(2002), “農村における都市との交流施策の類型及び展開に関する研究”, 平成14年度都市計画論文集, 都市計画 別冊 No.37, 日本都市計画学会: 937-942
- 小川 俊介(1998), “大阪市における景観政策”, 都市問題研究第50巻第1号: 105-117
- 松村 堅治(2002), “「まちづくりむらづくり」にみる農村の20年”, 日本農村計画学会 Vol. 21, No. 1: 53-59
- 柴田 久(2001), “景観施策に対する自治体の意識からみた住民参加型景観づくりの可能性に関する研究”, 平成13年度都市計画論文集, 日本都市計画学会 No. 36: 731-786
- 市川 嘉一(2003), “転換期に立つ「景観まちづくり」”, 日本経済新聞社日経産業消費研究所, 日経地域情報 No. 409: 1-16
- 神奈川県自治総合研究センター(2000), 条例の制定と運用, 東京:公人社
- 神田 昌幸(2003), “「美しい国づくり政策大綱」及び「景観緑三法」について”, 日本都市計画学会 Vol. 52 No. 5: 49-50
- 安田 修(2002), “住民と行政のパートナーシップによる地域づくりの課題”, 日本農土木学会誌 Vol. 70, No. 7: 652-654

日本都市計画家協会編(2003), 都市・農村の新しい土地利用戦略, 京都:学芸出版社
作山 康(2000), ‘お奨め補助事業一覧’, まちづくり事業企画マニュアル, 造形別冊 2, 東京: 建築資料研究社: .51-61
井上 繁(1996), まちづくり条例 -その機能と役割-, 東京:ぎょうせい
秋本 福雄(1997), パートナーシップによるまちづくり, 京都:学芸出版社
神戸市 홈페이지 <http://www.city.kobe.jp/cityoffice/27/nousei/kyosei.html>
八甫谷邦明(1998), 杉の森林が生む金山の産業と景観, 造景 No. 18, 東京: 建築資料研究社: 159-165
EEI住民参加特別検討委員会編(2000), 住民参加マニュアル, ジェームズ・クレイトン著